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발달장애인 식별지표 도입 및 형사·사법절차상 조력 강화〉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81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81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향엽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3. 27.

(3) 회 부 일 : 2026. 3.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이 지정되는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확인을 위한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하

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사기관의 장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직권으로도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식별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며,

식별지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제공 또는 누설하는 사람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② (생략)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u>신문하는 경우</u>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u>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u>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③ ----- <u>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하여 직권이나</u> ----- ----- <u>신청에 따라</u> -----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다만,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동
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발달장애인 식별지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형사·사법 절
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
장애인 식별지표(이하 “식별지표”
라 한다)를 개발하여 수사기관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
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별지표의 구
성요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발달장애인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① 수사기관의
장은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식별지표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
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가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요건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정보 파기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제42조(벌칙) <신 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2. (생략)	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벌칙) ①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종료 시 자료 또는 정보를 파괴하지 아니한 자 3. (현행 제2호와 같음)
--	--

2. 검토의견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수용자 127명¹⁾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2025. 3.~5.)에 의하면, 스스로 발달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39명이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은 인원은 27명(21.3%)에 그쳤으며, 대상자 중 다수는 ‘발달장애인’의 의미나 신뢰관계인 제도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전국교정청 산하 수용시설에는 기결·미결수 포함, 총 262명의 발달장애인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중 127명을 면담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12월,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절차 전반에 대해 신뢰관계인 등 보조 인력의 동석 의무화에 관한 사항,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는지 식별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²⁾

□ 개정안은 ①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제12조제3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활용할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며(제12조의2),

③ 식별지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등록사항 자료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12조의3),

④ 관련 자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제공 또는 누설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여(제42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력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보장과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국가인권위원회, (2025. 12. 1.),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미보장 등 차별 직권조사(24직권0001000 결정)」.

□ 첫째, 개정안은 신뢰관계인의 직권 동석 제도³⁾(제12조제3항)를 도입하면서, 부칙 제2조(적용례)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미 종료된 조사·신문 절차까지 소급하여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 칙

제2조(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중이거나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동 개정 규정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신문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 참고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피해자 증인신문(제163조의2) 및 검사·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제244조의5) 과정에서 증인·피의자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피의자·사건관계인 조사 시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은 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5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준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인 경우

4. 그 밖에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 한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개정 당시 부칙에서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한 바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17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2. 19세미만피해자등

부 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둘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활용할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그 구성요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2조의2),

이 같은 식별지표의 개발·보급을 위해서는 내용 설계를 위한 관련 연구, 관계기관 간 협의, 하위 법령 정비, 현장 적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안내·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포 후 6개월의 시행기간이 충분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은 식별지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2조의3),

이는 수사권 행사와 직접 연관되는 사항으로,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 관련 개별 법령(형사사법 절차 또는 경찰청 소관 법령)에서 자료 요청의 법적 근거와 범위 등(주체·요건·절차)을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가족관계등록자료, 주민등록자료, 건강보험자료, 장애인등록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제도의 집행 주체인 교육부장관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직접 근거를 두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응답의무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7조(자료 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채무자 본인과 채무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재산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고등교육기관
4. 금융회사등(은행연합회를 포함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공무원연금법」

제93조(공단의 권한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연금취급기관의 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50조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급여의 환수, 학자금 대여 등 공무원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4)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란 개인정보의 종류·범위 및 제공 요건 등을 개별 법률에서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⁵⁾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정안의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인 등록 여부) 및 제공 한계(발달장애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 범위) 등 기본적 사항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넷째, 개정안은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등에게 누설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업무 종료 시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제42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그 적절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자료·비밀 등을 목적 외로 사용·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법제처 2019. 9. 6. 회신 19-0018 해석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활용 금지 의무(제2항),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의무(제6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인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로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 비밀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제32조의6제3항·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는 각각 사회보장정보 또는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제5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4조에 따른 파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제40조의2(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편, 현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권 신뢰관계인 동석의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의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733호),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912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

구분	이주영의원안	이기현의원안	개정안
① 직권 신뢰관계인 동석 (제12조제3항 및 제5항)	-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문·조사 시 법원 및 수사기관의 직권 신뢰관계인 동석	
② 발달장애인 식별지표 도입 (제 12조의2)	-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 보급
③ 발달장애인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제12조의3 또는 제13조의2)	- 사건 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보 제공 요청 - 사전 동의한 발달장애인의 최소정보 제공	-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식별지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정보 제공 요청
④ 벌칙 신설(제42조)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에 대한 벌칙	-	-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 벌칙 - 자료·정보 파기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현행 형사·사법절차 관련 신뢰관계인 동석 지원은 법원·수사기관 직권으로 지원 가능하나, 일부 사건관계인에 대해서는 입법 사각지대 존재하여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개정을 취지 공감함.
-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이거나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 규정은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법원 등 관계기관 간 협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발달장애인 식별지표와 관련된 내용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동 지표의 필요성이나 방식 등에 대해 폭넓은 사전 연구와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내용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2